

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6. 7. .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 시킴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7조 제3항중 단서 조항 삭제
 - “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”를 삭제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 내지 제72조
-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(행정자치부)
 - 도 예산담당관실 - 1278('06. 3. 2)호와 관련임

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7조(회의) ①(생략) ②(생략)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u>	제7조(회의) ①(원안과 같음) ②(원안과 같음)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한다. <u>(단서 삭제)</u>

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은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

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5조(운영 및 기능)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
제6조(위원회 통합운영)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」에서 대행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중 사임 또는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제10조(실비변상)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「구미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」는 폐지한다.